의안 번호 **3374** 

##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의사일정(안)

□ 회 기: 2025. 11. 3.(월) ~ 12. 23.(화) 〈51일간〉

□ 의사일정

u) ¬	브 이 아 기	6] 2]
비고	부 의 안 건	일 시
	● 개회식	11. 3.(월)
	1. 안건처리	14:00
	※ 본회의 휴회: 11. 4. ~ 11. 17. 〈14일간〉	4 4 (=1)
본회의	1. 행정사무감사 (각 상임위원회별) (평일 10일)	11. 4.(화) ~
후 회	※ 운영위원회: 11. 17.(월)	11. 17.(월)
	1. 교섭단체 대표연설 (국민의힘)	11. 18.(화)
	2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	10:00
본회의	5 5	11 10 (4)
휴 회	휴 회	11. 19.(수)
	1. 교섭단체 대표연설 (더불어민주당)	11. 20.(목)
	2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	10:00
	1.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	11. 21.(금)
	※ 본회의 휴회: 11. 22. ~ 12. 15.〈24일간〉	10:00
보회 의 화	<u>휴</u> 회	11. 22.(토)
	공휴일	11. 23.(일)
	1. 상임위원회 활동 ( <mark>평일 7일</mark> )	11. 24.(월) ~
	※ 운영위원회: 12. 2.(화)	12. 2.(화)
		12. 3.(个)
	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(평일 9일)	~ 10 15 (91)
	1 01717171	
보회의	1. 상임위원회 활동 ( <mark>평일 4일</mark> )	12. 1/.(全)
후 회	※ 운영위원회: 12. 22.(월)	~ 12. 22.(월)
	1. 안건처리	12. 23.(화)
	※ 본회의 휴회: 12. 17. ~ 12. 22. 〈6일간〉   1. 상임위원회 활동 (평일 4일)   ※ 운영위원회: 12. 22.(월)	

<sup>※</sup>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은 당일 의사일정으로 정하며,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,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 가능 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,제16조)